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24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
|----------|-----------|-----------|--------|------------------------|------|----|--|--|
| | 수출지향형 | 전략형 | | | | | | |
| | TEMBB | 해외진출R&D | | | | | | |
| 상반기 | 시장확대형 | 전략기술 | | 2월 3일 ~ 2월 17일 | 2~4월 | 4월 | | |
| (1차) | 710-110 | 인증실증달성형 | | | L 72 | TE | | |
| | 시장대응형 | 일반/K-뷰티 | | | | | | |
| | | 소부장 | 1월 17일 | | | | | |
| | 수출지향형 | 전략형 | | | | | | |
| 하반기 | 시장확대형 | 인증실증달성형 | | 5월 8일 ~ 5월 <i>2</i> 1일 | 6~8월 | 9월 | | |
| (2차) | 710 7 110 | 후불형 | | | | | | |
| (- 1) | 시장대응형 | 일반 | | | | | | |
| | 10 110 6 | 소부장 | | | | | | |
| | 수출지향형 | 경쟁형 | 상반기 | | | | | |
| | | 함께달리기 | 하반기 | | | | | |
| | | 이어달리기 | 하반기 | | | | | |
|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DCP | 수시 | | | | | |
| 별도 공고 | | 초격차 | 하반기 | 별도 공고 예정 | | | | |
| | | 글로벌협력형 | 상/하반기 | | | | | |
| | | 공동효과형 | 하반기 | | | | | |
| | | 기술이전사업화 | 상/하반기 | | | | | |
| | | 구매연계·상생협력 | 상/하반기 | | | | | |
| | | 융자연계형 | 하반기 | | | | | |
| | | 구조혁신 | 하반기 | | | | | |

-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 과제별 공고 참조
-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중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Scale-Up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 л н | | | 시행 계획 | ţ | 변경 사항 | | | |
|-------------------|-------------------|--------------|---------------------|---|---|--------------|---------------|-----------------|
| 구 분 | '24년도 | | | | '25년도 | | | |
| | 내역사업 | 내내역 | 내내내역 | 1 | 내역사업 | | 내내역 | 내내내역 |
| | | | 일반 | | | | | 해외진출R&D |
| | | | 해외진출R&D | | | - | 경쟁형 | |
| | | - | 경쟁형 | 1 | 수출지향형 | | | 전략형 |
| | 수출지향형 | | 전략형 | 4 | | | 소부장 | 함께달리기 |
| | | | 융자연계 | \parallel | | | | 이어달리기 |
| | | A H TL | 함께달리기 | $\ $ | | 맨튀연 | ₩ VC추천 글로벌 | |
| | | 소부장 | 이어달리기 | \parallel | | | 저근너 | |
| 사업구조 | | | Tech-Bridge VC추천 | \parallel | | | 선탁기 | 글로벌협력형 |
| 게 ᆸ T 포 개편 | | 민간투자연겨 | | ╢ | | | | 공동효과형 |
| /II- | | | 프로젝트(DOP) | | 시장확대형 | | 인증실증달성형 | |
| | 시장확대형 | | | 1 | | | 전략형 | 기술이전사업화 |
| | | T17641 | <u> </u> | 1 | | | 270 | 전략기술 |
| | | 전략형 | 구매연계상생협력 | 1 | | | | 후불형 |
| | | | 일반 | 1 | | | | 구매연계상생협력 |
| | | 융자연계형 | | | 시장대응형 | | 일반 | |
| | 시장대응형 | | 소부장 | | | | 융자연계형 | |
| | | | 구조혁신 | 1 | 710-1100 | | 소부장 | |
| | | 제조안전 | | 1 | | | 구조혁신 | |
| | 구분 | | 분야 및 품목 | | 구분 | | | 분야 및 품목 |
| | 12대 국가전 | | 2대분야 50개중점/술 | | 국가전릭 | ᆤ기술· | 탄소중립 | 13대 분야, 124개 품목 |
| 중점지원 | | 혁신 선도 | 8대 분야, 52개 품목 | | 중소기업 타소 | | 혁신 선도 | 9대 분야, 57개 품목 |
| 분야 | 중소기업 탄소 | 중립이행 | 8대 분야, 50개 품목 | | | | 중립이행 | 8대 분야, 47개 품목 |
| (품목) | 전략기술 선장 로드맵 성장 | 동력 고도화 | 11대분야 61개품목 | | 전략기술 · 로드맵 | 성장 | 동력 고도화 | 11대 분야, 60개 품목 |
| | | 지털 전환 | 8대 분야, 61개 품목 | | | 新口 | 지털 전환 | 11대 분야; 54개 품목 |
| | 소·부·경 | | 9대 분야, 113개 품목 | | | 소·부·정 | | 좌동 |
| | | - | • | + | • (동시수 ³ | 행) 동 | | |
| | | | | | - | - | | 까지 최대 2개까지 가능) |
| 기타사항 | - | | | |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은 <u>'25년 협약 과제부터 적용</u> 하며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 | | |
| | | | | | | | | |
| | | | | | 1-1-16 | | | |
| | | | | • (보안등급분류) 연구개월기관에서 신성하고사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 | | | |
| | | - | | |) - 아픈 연구개결과제에 대한 모안과제 어무를 -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 | | |
| | | | | | | | | |
| | | | | | ^ 제누내는 | 하는 [함 | 붙임1] 참조 | |

3. `25년 지원내용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 (지원규모) 421억원 내외 (316개 과제 내외)

< `25년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규모 >

| 내역사업 | | 구분 | 상반기 (1차) | 하반기 (2차) | 계 |
|------------------------|----------------|-----|-------------|-------------|-------|
| | 전략형 | 예산 | 76억원 | 35억원 | 111억원 |
| 수출지향형 | 선택용 | 과제수 | 23개 | 27개 | 50개 |
| (143억원, 60개) | せいま 本っこっ | 예산 | 32억원 | | 32억원 |
| | 해외진출R&D | 과제수 | 10개 | | 10개 |
| | 인증실증달성형 | 예산 | 15억원 | 36억원 | 51억원 |
| | | 과제수 | 7개 | 38개 | 45개 |
| 시장확대형 | 전략기술 | 예산 | 13억원 | | 13억원 |
| (85억원, 71개) | | 과제수 | 6개 | | 6개 |
| | 후불형 | 예산 | | 21억원 | 21억원 |
| | | 과제수 | | 20개 | 20개 |
| | 일반 | 예산 | 47억원 | 11억원 | 58억원 |
| 시장대응형 (193억원, 185개) | 2 | 과제수 | 26개 | 14개 | 40개 |
| | K-뷰티 | 예산 | 18억원 | | 18억원 |
| | ν-π <i>-</i> Ι | 과제수 | 10개 | | 10개 |
| | 소부장 | 예산 | 18억원 | 99억원 | 117억원 |
| | エナる | 과제수 | 10개 | 125개 | 135개 |

- * 민간투자연계·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DCP), 연계지원과제, 지정공모과제 등 일부 과제 별도 공고 예정
-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 수출지향형 | 최대 4년, 20억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 65% 이내 | |
| 시장확대형 | 최대 3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 시장대응형 |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1 /5% YFN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35%,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및「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내역사업 | 지원자격 및 분야 | 참고문서 |
|-------|---|---------|
| 수출지향형 | 지원자격 및 문아 ○ 수출(전략형, 해외진출R&D)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이상인 중소기업 * `25.1.1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매출 및 수출 실적 미적용 기업>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 ②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또는 수출실적이 없는)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했거나「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삼극특허(등록), 진출희망국가의 국제표준인증 보유기업, 혁신성이 인정되는 해외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해당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③ 혁신제품 보유기업*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지원분야)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 전략품목 * (해외진출R&D)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해외 현지실증 필수 | 붙임 ①, ② |
| 시장확대형 | ○ 전략형(전략기술, 인증실증달성형, 후불형)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전략기술, 후불형)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 전략품목 · (인증실증달성형)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 전략품목 | 붙임 ①, ② |
| 시장대응형 | ○ 일반, K-뷰티, 소부장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일반)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전략품목 · (K-뷰티) 뷰티 산업 중 "기능성 원료 또는 친환경 부자재" 분야 · (소부장)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분야 전략품목 | 붙임 ①, ② |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 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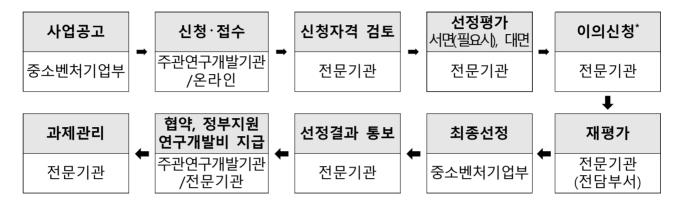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과제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1차) 2025년 2월 3일(월) ~ 2월 17일(월), 18:00까지
 - * 다상시업: 수출자항형전략형 해외집화&D, 시장확대형전략기술 인증실증달성형, 시장다음형일반 K.뷰티 소부장
 - (하반기, 2차) 2025년 5월 8일(목) ~ 5월 21일(수), 18:00까지
 - * 대상사업: 수출지향형(전략형, 시장확대형(전략기술, 인증실증달성형, 후불형, 시장대응형(일반, 소부장)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 참조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7. 기술료 징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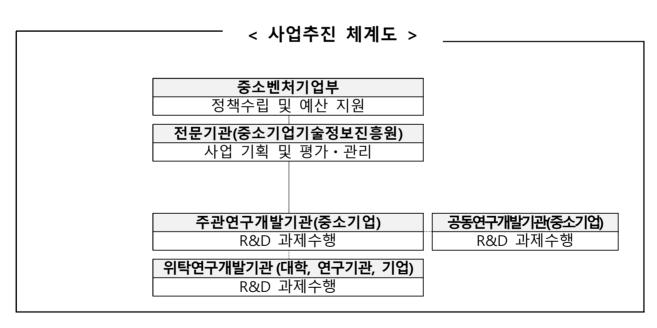
-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 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 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 사업안내

| 5 | 남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국번없이) 1357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1~8]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